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1537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박명환, 김희준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6.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B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3. 5. 선고 2009가단80944 구상금 사건의 1,238,981,1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2014. 10. 24. 원고에게 채권양도하였고, 2014. 10. 30.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채권양수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차전1222 양수금 사건)을 신청하여 2020. 1. 13.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20. 3. 17.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인 망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8. 12. 7. 사망하였고,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들인 E, B, 피고가 있었다.

다. 망 C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6. 21.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는 2019. 7. 1.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8.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갑 5호증,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당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B이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들 중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B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소극재산,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결과가 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결과는 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B의 법정상속분은 13,555,555원(=망 C의 순 상속재산 61,000,000원[=적극재산 218,000,000원(이 사건 부동산들의 2018년 시가)-소극재산 157,000,000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3,000,000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 84,000,000원)]×상속지분 2/9)이다.

나) 피고는 망 C의 치료비 등 32,825,670원, 망 C가 사망하기 전까지 망 C의 배우자 D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91,019,280원을 부담하는 등 망 C의 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여 망 C와 D를 부양해왔다. 피고가 망 C, D의 치료비 등 대부분을 지출한 것은 피고가 제2차 부양의무자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신분관계에서 제2차 부양의무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던 망 C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D, 자녀들인 E, B은 피상속인인 망 C에 대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과 피고의 기여분과 향후 D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D, E과 더불어 B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피고의 기여분과 향후 D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고려한 것이므로, B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별지목록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 76.4 m²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백담조 평층래브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3가구)

1층 44.40 m²2층 41.40 m²지층 44.40 m²

